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http://www.motie.go.kr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대한민국
경제혁신 3개년 계획
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세계무역기구과 김호철 과장(044-203-5630), 고상미 서기관(5631)
다자통상협력과 김진 과장(044-203-5640), 박윤주 주무관(5646)

세계무역기구, 무역원활화협정 의정서 채택
- 11.27. WTO 일반이사회 개최, 일반이사회 결정 3건 채택 -

□ **2014.11.27(목)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(WTO) '일반이사회'가 개최**되어 **발리패키지*** **이행을 위한 일반이사회 결정(General Council Decision)**** 3건을 채택함

* 2013.12.3~7일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시 채택된 4개 분야(①무역원활화, ②농업(일부), ③면화, ④개발/최빈개도국)의 10개 합의문(각료 결정 9개, 각료 선언 1개)

** WTO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, 일반이사회의 '결정(Decision)'은 WTO 협정의 일부

○ 이날 일반이사회에서 「①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에 관한 결정, ②무역원활화협정(TFA: Trade Facilitation Agreement)을 WTO 협정 부속서 1A에 부속시키기 위한 개정의정서, ③Post-발리 작업에 관한 결정」의 3가지 결정을 채택하고, 회원국들의 수락을 위해 TFA를 개방함

□ 제9차 WTO 각료회의시 합의된 이행 절차에 따라 당초 금년 7월 중 무역원활화협정 개정의정서 채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,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시기 및 식량안보 이슈와의 연계 문제와 관련한 **회원국들간 의견 대립으로 7월 개정의정서 채택이 무산**된 바 있음

○ 무역원활화협정(TFA)의 발효·이행과 관련하여 일부 개도국들은 이를 도하개발어젠다(DDA) 협상의 일괄 타결과 연계할 것을 주장하였으며, 인도는 '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*에 대한 영구적 해법 마련'과 연계하면서 무역원활화협정 채택에 반대해 왔음

* '개도국이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급한 보조금으로 인하여 WTO 농업협정상의 국내보조 한도를 초과하더라도, 영구적 해법이 마련될 때('17년)까지 이에 대한 WTO 제소를 잠정적으로 자제'하자는 내용으로 발리 각료회의시 합의하였음

□ 지난 **11.13일 미국과 인도가 무역원활화협정 이행과 식량안보 공공비축 이슈간의 연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합의**함에 따라, 11.27일 WTO 특별 일반이사회를 소집하고 발리 각료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일반이사회 결정으로 채택하는 것임

○ 「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에 관한 결정」은, '15.12월까지 영구적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, 제11차 각료회의('17년)까지 영구 해법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도 잠정 조치가 지속됨을 명확히함

○ 「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 부속서 1A에 부속시키기 위한 개정의정서」는, **회원국 2/3의 수락을 발효 조건으로 하여 WTO 협정 부속서 1A에 무역원활화협정을 추가**하는 내용임

○ 「Post-발리 작업에 관한 결정」은, 남아있는 DDA 협상의제에 대한 'Post-발리 DDA 작업계획(work programme)' 수립 작업을 즉시 재개하여 '15.7월까지 이를 채택하도록 함

□ 금번 결정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시키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**무역원활화협정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**

○ **(이행경과)** 작년 12월 발리 각료회의시 타결된 **무역원활화협정 이행을 위한 WTO 내 후속절차**가 그간 진행되어 옴

- **WTO 일반이사회 산하에 '무역원활화 준비위원회'를 설립**하여 발리 각료회의시 타결된 협정문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협정문을 최종 확정함('14.7.10)

- 개도국/최빈개도국(LDC)은 협정상 이행의무 중 협정 발효 즉시 이행할 의무(A의무)를 스스로 분류하여 WTO에 통보함

* '14.11.27일 기준, 총 50개의 개도국·최빈개도국이 A의무 통보

- **우리나라는 협정상 모든 의무**(참고자료내용중 제1조~제12조)**를 A의무로 분류하여 WTO에 조기 통보**('14.5.28)하고, 다른 회원국의 A의무 통보를 독려하여 조속한 협정 이행에 기여함

< 무역원활화협정 제14조에 따른 개도국/LDC의 이행의무 분류 >

○ A 의무 : 개도국/LDC가 협정발효 즉시 이행할 의무
○ B 의무 : 개도국/LDC가 협정발효 후 일정기간 후에 이행할 의무
○ C 의무 : 개도국/LDC가 협정발효 후 일정기간 후에 이행하며 이행을 위해 원조 및 기술 지원을 통한 능력배양이 필요한 의무

- 또한, WTO 사무총장은 개도국/LDC의 기술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'무역원활화협정 이행 지원 신탁기금(TFAF: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Facility)' 출범을 7.22일 발표하는 등 개도국/LDC의 협정 이행 동참에 기여함

○ **(의의·기대효과)** 무역원활화협정은 발리패키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, 동 협정의 발효는 **WTO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회복**과 더불어 **DDA 협상의 모멘텀 유지**에 기여할 전망

- **우리나라는 동 협정상의 제도를 이미 대부분 실행 중**에 있어 이행의 추가적 부담은 없는 반면, 협정 발효시 **개도국의 통관절차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***될 것으로 기대함

* "DDA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대응"(대외경제정책연구원, 2013) : 우리나라 실질 GDP 1.5-3.9% 증가, 수출 4.3-7.4% 증가
* OECD(2013) : 무역원활화 조치를 통한 잠재적 무역비용 감소 ⇨ 저소득 국가 14.5%, 중하소득 국가 15.5%, 중상소득 국가 13.2%, OECD 국가 10%
* ICC(국제상의)·PIIE(피터슨연구소) (2013) : 동 협정 발효시 전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수출 증가, 2천만개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전망

○ **(향후계획)** 정부는 향후 동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반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

□ 아울러, 앞으로 **'Post-발리 DDA 작업계획 수립' 및 DDA 협상 논의도 재개**될 것으로 전망됨

○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"금일 일반이사회 결정에 이어 모든 발리 결정의 이행 및 Post-발리 작업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을 즉시 시작하겠다"고 하고, "다음달 예정된 일반이사회(12.10)에서는 향후 협상 추진방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공유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 작업에 돌입해야 할 것"이라고 촉구하였음

○ 이에 따라, 정부는 그간의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, 분야별로 전문가, 업계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재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음

<참고> WTO 무역원활화협정 주요 내용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김호철 과장(WTO DDA 전반적인 사항, ☎044-203-5630), 다자통상협력과 김진 과장(무역원활화협정 관련 사항, ☎ 044-203-5640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WTO 무역원활화협정 주요 내용

□ Section Ⅰ : 이행 의무

구분	조항	주요내용
GATT 제10조 (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) 개선 및 명확화	제1조 정보의 공표 및 이용 가능성	공표, 인터넷을 통한 공표, 질의처 설치 등
	제2조 시행 전 의견제출 기회, 정보 및 협의	법령 시행 전 공표 및 의견 제출 기회 제공 등
	제3조 사전심사	품목분류,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 제공
	제4조 불복절차	세관 당국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사법적·행정적 불복 신청권 보장
	제5조 공정성, 비차별,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타 조치	제고된 통제 및 조사에 대한 통보, 유치, 시험 절차
GATT 제8조 (수출입 수수료 및 절차) 개선 및 명확화	제6조 수출입 관련 요금 및 수수료	수출입 관련 요금 및 수수료, 관세 [illegible] 위반시 벌칙규정
	제7조 물품의 반출 및 통관	도착전 처리, 전자적 납부, 반출 및 [illegible]세 부과, 위험관리, 통관후 심사, 평균 반출 [illegible]간 측정 및 공표, 인가된 영업자를 위한 무역원활 [illegible] 특송화물, 부패성 상품 관련 무역원활화 조치 등
	제8조 국경기관간 협력	무역원활화를 위한 국경기관간 협력
	제9조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	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허용
	제10조 수출입 및 통과 관련 절차	절차 및 서류 요건, 사본의 수용, 국제표준의 사용, 단일서류접수창구, 선적전 검사, 관세사의 사용, 공통 국경절차 및 통일된 서류 요건, 거부된 상품,, 일시수입 및 역내외 가공
GATT 제5조 (통과의 자유) 개선 및 명확화	제11조 통과의 자유	통과의 자유 보장
신규도입 (세관협력)	제12조 세관협력	관세법 등 위반 적발 위한 세관간 정보교환

□ Section Ⅱ : 개도국/최빈개도국 특별대우

분류	조항	주요내용
S&DT	제13조 일반 원칙	개도국/최빈개도국(LDC)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인(S&D) 대우 제공
	제14조 의무의 종류	A의무 : 개도국/LDC가 협정 발효시 즉시 이행 B의무 : 개도국/LDC가 협정 발효 후 일정 기간 후에 이행 C의무 : 개도국/LDC가 협정 발효 후 일정 기간 후에 이행하며, 원조 및 지원 제공을 통한 이행능력 획득 필요 * 각 개도국/LDC는 Section1의 규정을 어떤 의무로 분류할지 스스로 결정
	제15조 A의무의 통보 및 이행	A의무의 통보 및 이행 절차
	제16조 B/C 의무의 확정 이행일 통보	B/C 의무의 이행일 통보 절차
	제17조 조기경보체제	B/C 의무 이행 기간 연장
	제18조 B/C 의무의 이행	B/C 의무의 이행 절차
	제19조 B/C 의무간 이동	B/C 의무 간 이동 절차
	제20조 분쟁해결절차 유예	분쟁해결절차 회부 유예 기간 부여 - 개도국 : A의무 2년 - 최빈개도국 : A의무 6년, B/C 의무 8년
	제21조 능력배양을 위한 원조의 제공	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
	제22조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원조 관련 정보	공여국, 개도국/LDC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원조 관련 정보

□ Section Ⅲ : 제도규정/최종조항

분류	조항	주요내용
제도규정	제23조 제도규정	무역원활화 위원회 설치, 국별 무역원활화 위원회의 설치 또는 유지
최종조항	제24조 최종조항	협정의 이행, GATT 1994 및 SPS/TBT 협정과의 관계, GATT 1994의 예외 및 면제의 적용,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(DSU)의 적용 등